

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06호(2013.11.28)로 결정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(☎2241-277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15년 5월 21일

성 북 구 청 장

1. 변경취지 : 지역여건(단독주택, 급경사)상 개발의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본래의 기능(노유자 상담 등)은 주변 사회복지시설로 통합 확충·정비하고 본 시설은 폐지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,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사항임.
2. 도시관리계획(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조서
 - 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없음)
 -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 - 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 - 2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교통시설(변경없음)
 - 나. 공간시설(변경없음)
 - 다.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
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)

- 공공청사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학교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문화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위치 | 면적(m ²) | | | 최초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
| 기정 | ① | 사회복지시설 | 성북동 66-21 일대 | 300 | - | 300 | 1992-3-12 (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-68호) | 성북2동 노인정 |
| 폐지 | ② | 사회복지시설 (노유자시설) | 성북동 1-65 일대 | 1,735 | 감)1,735 | - | 2010-2-25 (성북구고시 제2010-12호) | |
| 기정 | ③ | 사회복지시설 (노유자시설) | 성북동 1-161 | 6,331 | - | 6,331 | 2010-2-25 (성북구고시 제2010-12호) | |
| 기정 | ④ | 사회복지시설 (노유자시설) | 성북동 1-162 | 2,477 | - | 2,477 | 2010-2-25 (성북구고시 제2010-12호) | |

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② | 사회복지시설 | • 사회복지시설 폐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유자 및 장애인등의 재활시설로서 지도·육성·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성북동 1-65번지 일대에 결정했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성북동 1-161번지, 1-162번지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 확충·정비하게 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(사회복지시설)을 폐지하고자 함 |

□ 건축물의 규모 결정(변경)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건축물의 규모 | |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|
| 기정 | ① | 사회복지시설 | 30% | 150% | 3층 이하(12m이하) | 제1종일반주거지역, 역사문화미관지구, 자연경관지구 |
| 폐지 | ② | 사회복지시설 (노유자시설) | 30%이하 | 90%이하 | 2층 이하(11m이하) | 제1종일반주거지역, 자연경관지구 |
| 기정 | ③ | 사회복지시설 (노유자시설) | 30%이하 | 90%이하 | 2층 이하(11m이하) | 제1종일반주거지역, 자연경관지구 |
| 기정 | ④ | 사회복지시설 (노유자시설) | 30%이하 | 90%이하 | 2층 이하(11m이하) | 제1종일반주거지역, 자연경관지구 |

□ 건축물의 규모 변경사유서

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-------|--------|---|---|
| ② | 사회복지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폐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유자 및 장애인등의 재활시설로서 지도·육성·상당 등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성북동 1-65번지 일대에 결정했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게 되어, 사회복지시설에 지정되었던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|

마. 방재시설(변경없음)

바. 환경기초시설(변경없음)

③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※ 본 고시로 폐지되는 사회복지시설 부지(성북동 1-65번지 일대)의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'정주환경관리구역 01-1' 적용

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3. 관계도면 : 지형도면(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)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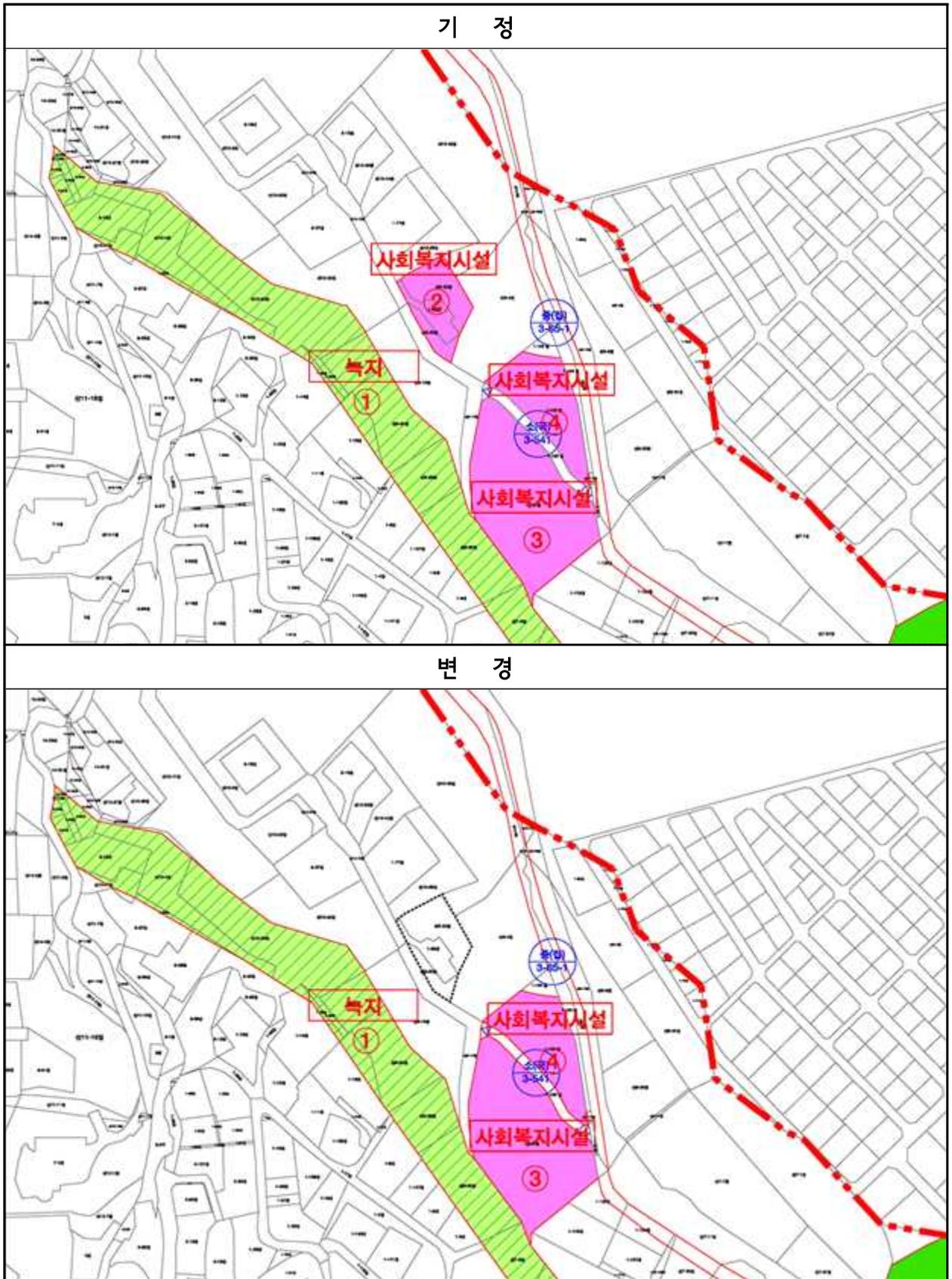
-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-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,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함

5.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

- 도시기반시설도



- 지구단위계획도

